

2-1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25. 8.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교육목적

- 제1조(교육목적)** ① 중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설립의 기본 정신과 ‘의와 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학술 이론과 지식을 추구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30.>

제2조(교육목표) “조문삭제” <개정 2005.8.30.>

제2절 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교육·연구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제3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사범대학, 경영경제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생명공학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예술공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0.4.8, 2011.8.26., 2014.2.6., 2014.9.25., 2018.4.26.>
-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 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건강간호대학원, 예술대학원, 심리서비스대학원, 보안대학원, 첨단광고PR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11.15, 2008.11.13, 2010.12.8, 2011.11.17., 2012.11.24., 2014.9.25., 2019.8.23., 2020.1.30., 2020.08.31., 2023. 9. 1.>
- ③ 이 대학교 각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0.3.1, 2010.4.8.>

④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

제5조(부속학교) ①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유치원을 둔다.

② 각 부속학교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연구지원시설) ① 이 대학교에 교육·연구 지원을 위하여 국제처,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처, 사회교육처, 의료원 등을 둔다. <개정 2006.11.15, 2009.1.21, 2010.12.8., 2013.4.30., 2014.2.6., 2016.5.30.>

② 교육·연구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신설 2004.1.1.>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내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그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12.5., 개정 2016.2.4., 2017.2.14., 2021.08.27.>

명칭	관련학과 (전공)	사업종목	소재지
아리 (Ari)	예술대학 전통예술 학부	국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통신 판매업 공연 기획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본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지점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④ 학교기업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5.>

제7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생활관, 공동기기센터, 건강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속농장, 미디어센터 등 필요한 기관을 둔다. <개정 2004.1.1, 2010.12.8., 2014.2.6., 2020.04.23.>

②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각 연구소) ① 이 대학교 연구처 산하에 각 연구소를 두며, 각 연구소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7.15, 2006.11.15, 2008.11.13, 2010.3.1., 2013.8.29., 2014.2.6., 2015.9.2.>

② 각 연구원 및 연구소에 관한 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교수의 소속·교수시간·재임용 등

제9조(전임교원의 소속) ①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및 학과(부) 또는 대학의 제 기관에 소속된다. <개정 2010.12.8.>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직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교수 등) ① 이 대학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외래교수,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10.12.8., 2019.8.23.>

② 겸임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1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1.>

제11조의2(교원의 재임용) 전임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2.15.>

제4절 교수회 및 위원회

제12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10.12.8., 2014.2.6.>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8., 2014.2.6.>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교무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교무,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2.8.>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각 대학장, 학술정보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총무처장(다빈치), 국제처장, 사회교육처장, 시설안전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정보통신처장, 구매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1, 2010.12.8, 2012.4.24., 2014.2.6., 2016.5.30., 2017.4.25., 2021.08.27., 2022.02.10., 2022.04.25., 2023. 4. 28., 2024. 12. 26.>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대학(원) 학과 등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8.>
3.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12.8.>
5. 교수회의 안건 중 중요사항
6.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생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2(대학운영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경영 및 일반행정(이하 ‘대학운영’ 이라고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8.26.>

②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26., 2014.2.6., 2015.9.2., 2022.04.25.>

③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26.>

④ 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1.8.26.>

1.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각 학문단위 및 부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26., 2014.2.6.>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학원위원회)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명예학위 포함)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기타 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중요사항을 심의 및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

제1절 학위과정 및 학생정원

제16조(학위과정) ① 이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연구과정과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박사학위과정 설치 기준) ①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의2]에서 정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임교원 중 2분의 1 이상이 박사학위 과정 설치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6편 이상
3. 예·체능계열 : 3편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특성을 갖는 학과(부, 전공)와 학과간 협동과정의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학과의 계열과 관계없이 참여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17조(학생정원) ① 이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학부·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6.30, 2012.4.24.>
②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별표 2-1과 같이 총정원제로 하고, 입학정원 중 1,175명은 서울캠퍼스, 190명은 다빈치캠퍼스로 하며 계열별·학과별 입학정원은 총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12.8, 2011.11.17, 2012.4.24., 2016.11.9., 2020.12.29., 2023. 4. 28., 2025. 4. 28.>
③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12.8, 2011.11.17.>

④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9.1, 2010.12.8, 2011.11.17, 2012.4.24.>

제18조(별도정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학사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그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대학 :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편입학생,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개정 2010.3.1.>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부(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1.1.>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 1-1, 2-2, 3-3과 같다. <신설 2004.1.1, 개정 2010.12.8.>

③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산업체가 50% 이상 지원한다. <신설 2013.4.30.>

④ 산업체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학생의 원에 따라 해당 계약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3.4.30.>

제2절 입학·등록 및 등록금 <개정 2022. 12. 26.>

제19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학생의 선발) ① 학생의 선발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4. 7. 8.>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22조(등록 및 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생은 7회 이상, 대학원생은 3회 내지 5회 이상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은 10학점 미만, 대학원은 3학점 이내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3. 1., 2018. 4. 26., 2021. 8. 27., 2022. 4. 25.>

③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가 재학연한 내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에 연구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

④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등록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대학원과정 : 수업료, 입학금

2. 학사학위과정 : 수업료(입학 실비용 포함)

⑥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9., 2022. 12. 26.>

⑦ 입학금 또는 수업료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2. 12.>

⑧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4.>

[본조 제목 개정 2022. 12. 26.]

제22조의2(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입학 및 교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학습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2.08.24.]

제3절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 및 재입학

제23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8.1.>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③ 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다만,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0, 2012.9.20.>

④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특별휴학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4., 2015.9.2., 2018.11.29.>

1. 군입대 휴학

2. 유급휴학

3. 창업휴학

4.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

5. 학사경고 휴학

⑤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9.20.>

제24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4주 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8.1.>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24. 7. 8.>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로 학사경고 휴학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다만, 약학부와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따로 정함 <개정 2018.11.29., 2022.04.25.>

4. 이중학적 보유자

5.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2.9.20.>

6.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27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8.>

③ 퇴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제26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약학부와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4.25., 2024. 7. 8.>

⑤ 대통령령 제11292호(1983.12.30), 동령 제12237호(1987.08.29), 동령 제13875호(1993.04.02)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학생활동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재입학에 대한 여석산출, 자격, 절차 등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12.>

제4절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28조(학년도 ·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3주 이상을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 · 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시 제32조제1항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이내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25.>

제3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제5절 교육과정 · 이수단위 · 수강신청 및 성적

제3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 · 실습 및 현장실습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8.>

제33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학부의 경우 D급 이상은 급제, F급 이하는 낙제로 하고, 대학원의 경우 C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P” 로, 낙제는 “F” 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
득 점	95점이상	94-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60점미만

제6절 수업,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등

제35조(수업)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6조(가상수업) ① 방송·통신에 의한 가상수업을 할 수 있다.

② 가상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현장실습수업 등) ①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 유관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봉사활동·어학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 2009.1.21.>

② 현장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24.>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2(평생교육) 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석 또는 원격기반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4.24.]

제39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0., 2014.4.24.>

④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6.>

제40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 요건,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

제41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8.1, 개정 2010.3.1.>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8.1.>

제41조의2(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

②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

제41조의3(소단위 전공과정) ① 다양한 전공 분야 이수 및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디그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 및 전과·전부

제42조(지원자격)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그 허가는 소정의 전형절차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일반편입학은 여석 산정 기준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 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편입학의 지원자격은 직전학년과정 학점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학사편입학자의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④ 기타 편입학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전과·전부) ① 전과 및 전부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이상에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 전과 및 전부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서약서 제출) ① 입학이 결정된 자는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절 교과목 및 학점

제46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학과 등에 교직과목을 둔다.

제47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이 대학교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등이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2 이상의 전공

2. 2 이상의 학과, 2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거나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전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입학년도별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1, 2009.1.21, 2012.4.24.>

- ②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 계열, 학과(전공)별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
- ③ 2 이상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학과 등의 전공이수 학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④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⑥ 전공, 2 이상의 전공 및 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15, 2009.1.21., 2014.2.6.>

제49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9 또는 20학점으로 한다. 다만, 유급에 따른 학점보충 및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24.>

- ②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전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③ 약학부와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2022.04.25.>

제50조(타 대학 취득학점) 재학 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 및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IT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1조(과정간 취득학점) ①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과목에 대하여 한 학기 3학점,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 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2014.9.25.>

제52조(기타 취득학점) ①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또는 전과·전부한 자의 전적대학 또는 학과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수업·재학연한, 시험, 학사경고 및 유급

제53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5년, 약학부는 6년, 의학부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 2022.02.10., 2024. 7. 8.>

1. <개정 2009.1.21., 삭제 2022.02.10.>

2. <개정 2009.1.21., 삭제 2022.02.10.>

② 학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한 후 총 평균성적이 4.00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1.>

제54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5년(15학기), 약학부와 의학부 9년(18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2022.02.10.>

② 외국인, 장애인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9.20.>

③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2.9.20.>

④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2.9.20.>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0.>

제55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수험자격) 매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57조(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

제58조(유급) ①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교과목 이수의 요건을 정한 약학부, 의학부 및 간호학과의 성적불량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년수료 및 졸업

제59조(학년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4., 2022.02.10., 2022.08.24.>

학년 구분 \ 구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7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 등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 등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230학점인 학과 (약학대학)	32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1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190학점 이상	23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265학점인 학과 (의과대학)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210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	265학점 이상

제6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2010학년도 이전), 창의ICT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대학은 140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230학점 이상,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의과대학은 265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2.15., 2012.4.24., 2015.9.2., 2019.4.25., 2022.02.10., 2022.08.24.>

② 전항의 학점은 제48조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4.1.1.>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15.>

④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15.>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소정 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에 합격한 자
4. 졸업인정제에 따른 대학별 영어능력 인정기준에 통과한 자. 다만, 졸업인정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전체 학년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에게 학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문단위별 졸업 가능 평균평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2015.9.2., 2019.4.25.>
- ② 수여학위의 종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11.15, 2007.11.26, 2008.11.13.>
- 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4.30.>
-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2.12.>

제61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30.]

제5절 학생자치활동 및 지도

제62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4.>

제63조(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회원은 재학생으로 하며, 그 구체적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15.>

제64조(임무 및 기능) 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65조(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및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② 대학 내에서의 활동은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등 각종 법령 및 학칙과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4.>
-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6조(학생활동 제한) 학생 교육목적 및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7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8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장학금·포상 및 징계

제69조(장학금) ①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과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 ③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15.>

제71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퇴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수업 및 재학연한

제72조(지원자격) ①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11.13., 2018.11.29.>
3.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일반대학원 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23. 9. 1.>

1. 교원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단, 의학부(임상) 교원은 소속 대학장 및 병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설 2023. 9. 1.>
2. 직원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단체협약기준에 의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신설 2023. 9. 1.>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지원학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편입학)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전과 및 전공변경)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25., 2024. 7. 8.>

1. 지도교수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2. 학사 개편 또는 교무 운영 등의 사유로 소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08.27.>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문 개정 2016.2.4.]

제75조(수업)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

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7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무용학과는 석사학위과정 2.5년, 박사학위과정 2.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5년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26, 2009.1.21., 2010.3.1., 2017.8.29>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의 경우 2년, 야간(주말과정 포함)의 경우 2년 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야간(주말) 과정도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③ 일반대학원에서 제78조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이 95점 이상인 자 또는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6월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총평균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 2017.4.25.>

제77조(재학연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0.3.1.>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78조(수료학점)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다만, 자연계열은 57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연구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4학점(다만, 자연계열은 6학점)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20, 2006.11.15, 2007.11.26., 2010.3.1. 2017.8.29., 2018.4.26., 2018.11.29.>

1.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과정은 5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5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108학점 이상
2. 일반대학원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전공연구 및 프로젝트연구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2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8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2학점 이상
3. 일반대학원 약학과 및 글로벌혁신신약학과는 프로젝트연구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3학점 이상 <개정 2020.04.23., 2020.12.29.>
4.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45학점 이상, 국제대학원은 42학점 이상
5. 일반대학원 AI학과는 전공연구 및 AI+X(전공융합)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2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8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2학점 이상 <신설 2020.04.23.>

② 특수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8학점 이상, 연구과정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1.2.>

③ 전항의 수료학점과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선수과목이수) 필요에 따라 학부 및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이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교와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2010.3.1.>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이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8학점(다만,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및 약학과 석사학위과정 편입자의 경우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용된 교원의 전적대학에서 지도하던 학생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8.4.26.>

④ 이 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동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업연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⑤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81조(과정간 취득학점인정) ① 학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졸업기준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한 학기에 3학점, 총 6학점까지 학부의 해당 학과장과 대학장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제82조(학점교환) ① 이 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② 이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3조(수강학점) 매 학기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학점 이내(다만, 일반대학원 무용학과는 12학점 이내로 하며, 수강학점에 선수과목은 제외), 특수대학원 야간의 경우는 6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9학점) 이내, 주간학원의 경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0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또는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3.1, 2012.9.20., 2014.2.6., 2017.4.25., 2017.8.29.>

제84조(학위논문제출 시한, 자격시험 및 심사) ① 학위논문제출시한은 제77조의 재학연한으로 한다.

② 이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제출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과(부)·전공의 경우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2. 19.>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논문을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4. 12. 26.>

⑤ 각 학위별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9.>

제85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① 이 대학원 학위의 종류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15, 2007.11.26, 2008.11.13.>

②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수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의2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필요시 별도의 서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자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④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산업발전 및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87조(수여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2.12.>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제3절 협동과정 및 연수연구원

제88조(협동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산업체와 협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대학교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박사후과정생(Post doc.)으로 위촉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박사후과정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박사후과정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90조(학생지도)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91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지조가 견고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징계)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8.>

제5장 학칙개정

제93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사 운영상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무부서를 거쳐 학칙 개정 조정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② 총장은 학칙 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견제출) ①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제96조(심의·공포) 학칙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07.11.26.>

제97조(보고) <삭제 2013.4.30.>

제6장 학교기업<삭제 2013.12.5.>

제98조(학교기업 설치) ~ 제103조(운영세칙) <삭제 2013.12.5.>

제7장 대학평의위원회<신설 2006.11.15.>

제104조(대학평의위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중앙대학교 법인 정관 제9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제105조(운영규정)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체평가<신설 2009.1.21.>

제10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 2010.12.2.>

제10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12.2.>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국제대학원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중앙대학교학칙, 중앙대학교 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전조의 폐지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야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4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각각 42학점, 54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학·군복무·기타의 사유로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한 자는 이 학칙 제48조 1항 및 2항을 적용하고, 1996학년도에 학부로 입학한 자 및 1996학년도 이후에 학부로 복학한 자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이 학칙 제48조 2항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제7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8월 30일 현재 박사학위과정에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수업연한을 2년 6월로 한다. 다만, 제76조 3항은 1998년 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6 특수대학원 수여학위 중 예술대학원의 예술학석사는 1997학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⑤ 1998학년도 전반기부터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로 입학하여 제적 또는 재적하고 있는 자가 동 학과가 통합 운영된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정원은 예술대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제정)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대학교 제 규정의 내용 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학위논문제출시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 이 학칙 시행 이전 각 대학원 학칙에 정한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자에게는 2002년 8월 이전까지 소정의 등록 및 심사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첨단영상전문대학원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26조 3호는 2000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의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편입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편입학자의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제27조 4항은 2000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999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 광역화 또는 학부제 등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기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④ 이 변경 학칙 제61조 1항의 4호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 학칙 제54조 및 제27조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0년 3월 1일 변경 학칙 부칙 제2조 제2항 중 1999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 학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학칙 변경 당시 기 수여된 증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변경 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에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 서식으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인 공과대학 건설·건축계열과 건설대학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설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의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학칙 중 제8조제2호, 제22조, 제48조, 제53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8조제1항 교양교과과정 이수학점 상·하한 규정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8.24.>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장애학생학점등록)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학칙 제78조(수료학점) 제2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별표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술학위) 명칭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9조(학년수료) 제2항, 제60조(졸업학점)는 200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7.15.>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연구소 중 해산, 신설, 통폐합된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소 관련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8.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조(교육목적)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17조 제1항 (별표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중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명칭 변경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제2항 (별표 2)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정원표 중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증원 사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와 문화학과의 신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4항 (별표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산업경영대학원과 창업경영대학원의 통합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학칙 변경 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같은 대학원의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이 학칙 변경 당시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전통춤 전공 및 창작연희춤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사전공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같은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때에도 같다.

부 칙 <개정 2005.12.20.>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11.1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대학원)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대학, 국제경영대학원 폐지 및 미디어공연영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 제1항 (별표1), 동조 제3항 (별표3-1), 동조 제4항 (별표3-2)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 제2항 (별표2)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민속학과, 학과간협동과정 북한협력개발학과·스포츠산업정보학과와 석사과정 신설 및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학과간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문화연구학과와 박사과정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의 입학정원 조정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학원 통합·명칭변경·모집단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일반대학원 생물학과, 학과간협동과정 과학학과·문화학과,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영상예술학과, 국제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및금융전공·국제관계및통상전공·국제통번역전공, 건설대학원 건설공사관리학과) 및 폐지되는 모집단위(학과간협동과정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산업·창업경영대학원 도시행정정보전공·인터넷비즈니스전공·경영컨설팅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해당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과 통합·폐지, 단과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문과대학·공과대학·정경대학과의 통합 및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의 신설로 인해 폐지되는 학과(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예술대학 연극학과·영화학과, 외국어대학 독어학과·불어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학부 행정학전공, 건설대학 도시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③ (국제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경영대학원은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7.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중 제17조제1항 (별표1) 학과명칭 변경(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학부전공교체(국악대학 창작공연학부, 연희예술학부), 전공명 변경(타악연희전공)과 (별표 4) 수여학위변경(가족복지학과, 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제2항 (별표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조정 및 국제관계학과 신설, 학과통합(중국지역학과), 학과명변경(북한개발협력학과), 연계학과변경(북한개발협력학과), 학과계열변경(통계학과)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조정, 학과신설(창업학과), (별표 3-1)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조정(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대학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의 박사과정 정원조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중 제86조제1항 (별표5), (별표6), (별표7) 학위명변경(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 북한개발협력학과, 북한SOC학과, 지방행정학과), 학과신설(창업학과, 도시마케팅학과)에 따른 학위명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통합(일반대학원 중국지역학과), 명칭변경(문화재과학과, 북한개발협력학과,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건설대학원 북한SOC학과,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과)으로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당해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첨단영상대학원 제작석사학위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시 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9.1.2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8장 자체평가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중 제4절 13조 교무위원회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 (별표1)의 입학정원 증원(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확통계학부, 정경대학 : 광고홍보학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 연극영화학부), 전공 폐지(공과대학 : 화학신소재공학부(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공 신설(미디어공연영상대학 : 신문방송학부(언론저널리즘전공, 미디어콘텐츠전공), 입학정원 모집중지(법과대학 : 법학과, 약학대학 : 약학부), 전공학부 신설(자유전공학부), 학과폐지(외국어대학 :

독어학과, 불어학과, 사회과학대학 : 공공정책학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별표 2)의 학과명 변경(역사학과), 학과폐지(건축미술학과), 박사과정 신설(학과간 협동과정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재생에너지학과), 석사과정 신설(학과간협동과정 : 재생에너지학과, 건축미술학과) 및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증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전문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1)의 대학원 신설(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2)의 학생정원조정(사회개발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대학원, 의약식품대학원, 예술대학원), 전공명 변경(교육대학원 : 윤리교육전공, 국악교육대학원 : 국악전문교육전공)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1항제5호는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 및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⑥ 이 학칙 중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 수여학위종별(별표4)의 연계전공 신설(국제물류 : 경영학사), 융합전공 신설(공연영상 : 공연영상융합학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 중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72조(지원자격), 제80조(학점인정),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대학원 학위의 종류(별표 6) 전문대학원 신설(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의 수여학위 변경(해운물류학과 : 국제물류학석사)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폐지(일반대학원 : 건축미술학과), 학과신설(학과간협동과정 : 건축미술학과)로 인해 변경전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당해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개정 학칙 제48조(이수학점)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3.1.>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외) 제76조 3항 및 제78조 1항, 제83조 중 석·박사학위통합과정과 관련된 규정은 2010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9년 후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의 모집단위(정경계열

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모집 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해당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개정 2010.4.8.>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4조 1항은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 개정학칙 제4조 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6.30, 2010.1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대학 통합 또는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대학의 통합 또는 폐지되는 대학(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산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안성),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신설 2010.12.08)

② (학과(부) 통합, 명칭변경 및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부)의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되는 모집단위(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일어일문학과·민속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학과·청소년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글로벌지식학부(서울·안성)와 안성캠퍼스의 산업과학대학·예술대학·외국어대학·사회과학대학·생활과학대학·음악대학·체육과학대학·국악대학 전(全) 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0.12.08)

제3조 (적용례) 이 학칙 중 제17조 (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 1)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적용특례) 이 학칙(2007. 11.26) 부칙 제2조제3항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위명은 학칙(2006.11.15)에 따른 학위명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0.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제2항 별표 2(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제17조제4항 별표 3-2(특수대학원 학생 정원표), 제61조제2항 별표 4(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 제86조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10조 제1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일반과정 노어노문학과, 민속학과, 정치외교학과, 무역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원예과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의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 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에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② 이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일반과정 정보시스템학과 석사학위과정,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과정, 생명공학과 석사학위과정, 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 석사학위과정, 토목환경공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영어언어과학학과 석박사학위과정, 건축미술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제3조(정보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대학원은 2011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제4조 (적용례) ① 이 학칙중 제9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교육·연구지원시설), 제7조(부속시설), 제12조(교수회), 제13조(교무위원회), 제13조의2(교학위원회), 제15조(기타 위원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1.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학대학 6년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1.8.26.>

제1조 (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 1)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통합에 따른 승계)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은 중앙대학교가 승계한다.

제3조 (대학 신설,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은 신설된 적십자간호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폐지되는 모집단위(안성캠퍼스 경영학부·경제학부·지식경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제4조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은 2014년 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동 대학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존속기간 종료 후 중앙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으며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11.17.>

제1조 (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 1)의 입학정원 증원(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경영경제대학 : 경영학부), 입학정원 감원(사범대학 :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학과폐지(사범대학 : 가정교육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 2)의 박사과정 신설(도시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 : 융합의약과학과, 분자영상과학과), 석사과정 신설(학과간협동과정, 융합의약과학과, 분자영상과학과, 해운물류학과), 학과폐지(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및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증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전문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3-1)의 대학원 명칭 변경(글로벌대학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2)의 전공명 변경(건설대학원 : 건설시스템 BIM학과, 국악교육대학원 : 국악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학과 폐지(행정대학원 : 문화예술행정학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전공폐지(윤리교육, 컴퓨터교육 전공)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⑥ 이 학칙 중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대학원 학위의 종류(별표 5)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② (글로벌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12년 2월 28일자로 모집 중지한다. 다만 동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4.24.>

- ① 이 학칙은 2012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중 제13조(교무위원회) 제2항 중 교무처장의 위원 추가구성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1)의 입학정원 증원(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별표2)의 계약학과 석·박사과정 신설(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⑤ 폐지된 일반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의 학과명 및 학위명을 2013년 2월부터 인적자원개발학과(인적자원개발학박사)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⑥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3-2)의 전공명 변경(건설대학원 :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⑦ 이 학칙 중 제29조(수업일수), 제30조(휴업일), 제48조(이수학점), 제49조(학기당 수강학점), 제59조(학년수료), 제60조(졸업학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 중이거나 자퇴 등으로 인해 제적 중인 학생의 졸업학점은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또한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이 학칙상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2.9.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2-1]의 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신설(인적자원개발학과) 및 제3항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3-1]의 글로벌대학원 정원조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 2-1], [별표 2-2] 일반대학원 정원(석사 156명, 박사 34명)의 안성캠퍼스 분리는 2012년 9월 1일(201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2]의 패션예술학과 학과 명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 [별표3-2]의 석사과정 학과 신설(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과 [별표 3-3]의 신문방송대학원 계약학과(차세대콘텐츠기획 전공)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④ 이 학칙 중 제23조(휴학) 제3항, 제26조(제적) 제5호, 제54조(재학연한)은 2013학년도 신입학생, 동 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 ⑤ 이 학칙 중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일반대학원 수여학위 [별표 5]의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11.24.>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에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조직운영 존속기한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칭 사용은 2017학년도까지 존속·유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칭사용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학사과정 운영기한, 학위취득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서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취득한 법학사 학위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 재적 중에 있거나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재적 또는 제적 학생으로서 학적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제1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학칙 중 제61조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③ 이 학칙 별표 2-1 중 예체능계열의 일반대학원 캠퍼스간 정원조정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6.18.>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8.29.>

①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8조(각 연구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5.>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사항 반영) 이 개정 학칙 중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된 자연과학대학(안성)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변경된 직제 중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의 단과대학 명칭은 201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자원공학부, 식품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과 재적학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의한 단과대학 명칭을 따른다.

부 칙 <개정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전 경영학부 글로벌금융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재적 또는 제적학생으로서 학적을 유지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201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제81조제1항은 201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별표4)의 ‘창업학’ 융합전공 신설 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명칭변경, 학과통합,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가정학과 등) 및 명칭 변경, 통·폐합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국지역학과, 러시아문화학과, 북한개발협력학과, 비교민속학과, 기록관리학과, 산업경제학과, 도시공학과, 사진학과, 서양화학과, 조소학과, 한국화학과, 공예학과, 패션예술학과, 연극학과, 무용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5.2.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과(전공), 학위 명칭 신설·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별표 2-1)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의학과 명칭 변경 사항은 2015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4.27.>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9.2.>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의2(산학협력단) 제3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2-1]의 박사 학위과정 학과명칭(음악이론학과)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변경된 학과명칭에 따른 신입학생 모집은 2016년 9월 1일(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2-1]의 학·연·산 협동과정에 개설된 학과(융합공학과)와 학과간협동과정에 신설된 박사학위과정(독일유럽학과)은 2016년 9월 1일(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별표 2-2)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는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 3-2)의 학과·전공명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하고, 입학정원 및 제3항의 (별표 3-1)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6조는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별표2-1)의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독일유럽학과 학위명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④ 이 개정 학칙 중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제6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1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의2(산학협력단)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7.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및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 2-1) 및 (별표 2-1-1)의 도시개발·정책학과는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2-1)의 학과명 변경(문예창작학과)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76조(수업연한) 제3항 및 제83조(수강학점)의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한 조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별표 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제61조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전공과 제17조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제86조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식물생명공학과는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제80조제3항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및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에 대한 개정 사항(단, 융합전공은 제외)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중 의학교육 개편에 따른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제2항의 개정 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11.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연계전공 신설(글로벌 한국학, 한국학사), 융합전공 신설(소프트웨어벤처, 소프트웨어벤처융합학사)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의회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은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78조(수료학점) 제1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4.2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식품생명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학과명 변경과 제약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융합보안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명 변경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석사 과정 신설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과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의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산업융합보안학과 석사과정 폐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의 (별표 3-3)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차세대콘텐츠기획전공 석사과정 폐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중 제약학과는 2019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의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과 제4항의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의학과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는 2014학년도 8월부터 본 학칙에 의해 수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1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연계전공 신설(공공관리, 공공관리학사), 융합전공 신설(문화다양성, 문학사)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 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스마트 시티학과와 AI산업융합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20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첨단소재부품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중 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2020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제1항의 (별표 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제61조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예술공학대학 학과명 변경(예술공학부)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위명 변경(공학사)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본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2020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 및 제 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대학원명(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및 학과명(커뮤니케이션학과)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변경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4.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AI학과 및 첨단소재공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78조(수료학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글로벌혁신 신약학과 및 AI학과와 관련된 규정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 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제61조 (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AI학과 및 첨단소재공학과 신설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 1)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및 제86조 (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AI학과, 글로벌혁신신약

학과 및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⑤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의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신설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7조(부속시설) 제1항의 중앙사회복지관 폐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78조(수료학점) 제1항제3호의 제약학과와 관련된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제3항의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과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6) 전문대학원 수여학위,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2.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융합전공 신설(한류문화(문학사))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3항의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의 정원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학칙 중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제2항의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조문 삭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제6조의2(산학협력단) 제3항의 학교기업 카우페스(CAUPES) 폐지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보안대학원 학과명(산

업보안정책학과)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학과명(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변경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의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교육대학원(서울) 교원양성과정 정원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제1항, 제54조(재학연한) 제1항, 제59조(학년수료) 제2항, 제60조(졸업학점)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 및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2.0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융합전공명(금융AI) 및 수여학위명(금융인공지능학사)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8.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59조(학년수료) 제2항 및 제60조(졸업학점) 제1항의 의과대학 졸업학점 및 학년수료학점 신설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규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행정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행정학과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59조(학년수료) 제2항, 제60조(졸업학점)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의과대학 의학부 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의 (별표 3-3)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건설대학원 글로벌ESG건설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및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공과대학학부(과)명 변경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22조(등록 및 등록금) 제5항의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2.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및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의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전공명 변경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 1) 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6.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의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

술학위)의 일반대학원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의 (별표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의 (별표 1) 2026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의 (별표 3-3)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보안대학원 보안공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6조의2(박사학위과정 설치기준)의 박사학위과정 설치기준 및 제84조(학위논문제출 시한, 자격시험 및 심사) 제3항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신설 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의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의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화학공학과 명칭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응용예술공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다음 각 호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의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전기연구원) 및 학과간 협동과정(ICT안전학과) 신설
2.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Sustainable Management MBA) 신설
3.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표의 ICT융합안전학과 신설
4.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ICT안전학과 및 ICT융합안전학과 신설, (별표 6) 전문대학원 수여학위의 경영전문대학원 Sustainable Management MBA 신설

부 칙 <개정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6) 전문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2.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 1) 2026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 1)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4.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3항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의 개정 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7.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제2항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보안공학과 학위명 변경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8.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및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신설 2020. 4. 23., 개정 2022. 12. 26., 2023. 2. 13., 2023. 4. 28.>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인문대학 (서울)	355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서울)	416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범대학 (서울)	140	
	30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50	영어교육과
	30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서울)	166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서울)	452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창의ICT 공과대학 (서울)	284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소프트웨어대학 (서울)	190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경영경제대학 (서울)	705	
	704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1	지식경영학부**
약학대학 (서울)	120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의과대학 (서울)	86	의학부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200	간호학과
예술대학 (서울)	96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서울캠퍼스 소계	3,210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생명공학대학 (안성)	325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대학 (안성)	552	
	117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75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168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86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85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21	글로벌예술학부(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체육대학 (안성)	120	스포츠과학부(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예술공학대학 (안성)	131	예술공학부
공과대학 (안성)	40	첨단소재공학과
다빈치캠퍼스 소 계	1,168	
총계	4,378	

주1) 소프트웨어학부* 내 인공지능트랙, 스마트IoT트랙, 엔터프라이즈SW트랙, 디지털미디어트랙의 4개 트랙을 운영함

지식경영학부** 정원의 입학정원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 제14호 다목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전형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입학정원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신설 2023. 4. 28.>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인문대학 (서울)	355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서울)	416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범대학 (서울)	140	
	30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50	영어교육과
	30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서울)	166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서울)	452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창의ICT 공과대학 (서울)	284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소프트웨어대학 (서울)	190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경영경제대학 (서울)	705	
	704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1	지식경영학부**
약학대학 (서울)	120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의과대학 (서울)	86	의학부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200	간호학과
예술대학 (서울)	96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서울캠퍼스 소계	3,210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생명공학대학 (안성)	325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대학 (안성)	552	
	117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75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168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86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85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21	글로벌예술학부(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체육대학 (안성)	120	스포츠과학부(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예술공학대학 (안성)	131	예술공학부
공과대학 (안성)	40	첨단소재공학과
다빈치캠퍼스 소 계	1,168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총계	4,378	

주1) 소프트웨어학부* 내 인공지능트랙, 스마트IoT트랙, 엔터프라이즈SW트랙, 디지털미디어트랙의 4개 트랙을 운영함
지식경영학부** 정원의 입학정원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 제14호 다목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전형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입학정원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2026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신설 2023. 12. 21., 개정 2025. 2. 13., 2025. 4. 28., 2025. 7. 2.>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인문대학 (서울)	355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서울)	416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범대학 (서울)	140	
	30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50	영어교육과
	30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서울)	166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서울)	452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창의ICT 공과대학 (서울)	304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소프트웨어대학 (서울)	206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경영경제대학 (서울)	715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광고홍보학전공, 글로벌광고PR전공***)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	지식경영학부**
약학대학 (서울)	120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의과대학 (서울)	86	의학부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200	간호학과
예술대학 (서울)	96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가상융합대학 (서울)	-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
서울캠퍼스 소계	3,256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생명공학대학 (안성)	325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대학 (안성)	552	
	117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75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168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86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85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21	글로벌예술학부(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체육대학 (안성)	120	스포츠과학부(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예술공학대학	131	예술공학부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안성)		
공과대학 (안성)	40	첨단소재공학과
다빈치캠퍼스 소 계	1,168	
총계	4,424	

주1) 소프트웨어학부* 내 인공지능트랙, 스마트IoT트랙, 엔터프라이즈SW트랙, 디지털미디어트랙의 4개 트랙을 운영함
지식경영학부**는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로서 별도 입학정원 없음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 글로벌광고PR전공***,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
학과(전공)로서 별도 입학정원 없음

(별표 1)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신설 2025. 2. 13., 개정 2025. 4. 28., 2025. 7. 2.>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인문대학 (서울)	355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서울)	416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범대학 (서울)	140	
	30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50	영어교육과
	30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서울)	166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서울)	452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공학과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창의ICT 공과대학 (서울)	304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소프트웨어대학 (서울)	206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경영경제대학 (서울)	715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광고홍보학전공, 글로벌광고PR전공***)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	지식경영학부**
약학대학 (서울)	120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의과대학 (서울)	86	의학부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200	간호학과
예술대학 (서울)	96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가상융합대학 (서울)	-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
서울캠퍼스 소계	3,256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생명공학대학 (안성)	325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대학 (안성)	552	
	117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75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168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86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85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21	글로벌예술학부(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체육대학 (안성)	120	스포츠과학부(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예술공학대학 (안성)	131	예술공학부
공과대학 (안성)	40	첨단소재공학과
다빈치캠퍼스 소 계	1,168	
총계	4,424	

주1) 소프트웨어학부* 내 인공지능트랙, 스마트IoT트랙, 엔터프라이즈SW트랙, 디지털미디어트랙의 4개 트랙을 운영함
지식경영학부**는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대상 정원의 전담학과로서 별도 입학정원 없음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 글로벌광고PR전공***,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의 전담
학과(전공)로서 별도 입학정원 없음

(별표 1-1)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개정 2019.8.23., 삭제 2022.02.10.>

(별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4.30., 2013.6.18., 2013.8.29., 2014.2.6., 2014.9.25., 2015.2.12., 2016.2.4., 2016.9.2., 2016.11.9., 2017.4.25., 2017.8.29., 2018.11.29., 2019.4.25., 2019.8.23., 2019.12.19., 2020.04.23., 2020.08.31., 2020.12.29., 2021.08.27., 2022.02.10. 2022.08.24., 2023. 2. 13., 2023. 4. 28., 2023. 6. 26., 2024. 2. 19. 2024. 4. 30., 2025. 4. 28., 2025. 7. 2.>

석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986명)		박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379명)	
일반과정 (60개 학과)		일반과정 (57개 학과)	
계	열	계	열
1. 인문·사회계열	26학과	1. 인문·사회계열	26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문화학과		▶유럽문화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철 학 과		▶철 학 과	
▶역사학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법 학 과 ▶정치국제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회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법 학 과 ▶정치국제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회계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2. 자연과학계열	13학과	2. 자연과학계열	13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생명과학과 ▶수 학 과 ▶동물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공학*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 학 과 ▶시스템생명공학과* ▶글로벌혁신신약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생명과학과 ▶수 학 과 ▶동물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공학*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 학 과 ▶시스템생명공학과* ▶글로벌혁신신약학과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식품안전규제과학과*	
3. 공학계열	13학과	3. 공학계열	12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융합공학과 ▶도시개발·정책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AI학과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응용예술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융합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AI학과****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응용예술공학과*	
4. 의학계열	1학과	4. 의학계열	1학과
▶의 학 과		▶의 학 과	
5. 예술계열	7학과	5. 예술계열	5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조형예술학과 ▶공연예술학과 ▶무용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학과 ▶디자인학과 ▶공연예술학과 ▶무용학과*	

*표기 학과는 다빈치캠퍼스 교육장을 사용하는 학과임

***표기 학과는 정원외 학생에 한해 선발

****표기 학과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학과로 아래 정원을 포함하여 모집

석사학위과정	정원	박사학위과정	정원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원확보율 충족형)	2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원확보율 충족형)	3
		▶ AI학과 (교원확보율 충족형)	6
		▶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교원확보율 충족형)	6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 연 · 산 협동과정		학 · 연 · 산 협동과정	
연 구 소	관련학과	연 구 소	관련학과
▶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과학과, 약학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과학과, 약학과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안전규제과학과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안전규제과학과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약학과, 융합공학과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약학과, 융합공학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공학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공학과
▶ 명문제약(주)	약학과	▶ 명문제약(주)	약학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공학과
▶ 국립암센터	약학과	▶ 국립암센터	약학과
		▶ 한미약품(주)	약학과
▶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공학과
▶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공학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공학과
▶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전기공학과	▶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전기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9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8학과)
학과명	학과명
▶ 문화재학과	▶ 문화재학과
▶ 문화연구학과	▶ 문화연구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9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8학과)
학과명	학과명
▶ 독일유럽학과	▶ 독일유럽학과
	▶ 창업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 인적자원개발학과
▶ 동북아학과	▶ 동북아학과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학과
▶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 융합보안학과	▶ 융합보안학과
	▶ 예술학과
▶ 아동청소년학과	▶ 아동청소년학과
▶ 뉴미디어아트학과*	
▶ 향장예술학과*	
▶ 스포츠융합공학과*	▶ 스포츠융합공학과*
▶ 의회학과	▶ 의회학과
▶ 스마트시티학과	▶ 스마트시티학과
▶ 첨단소재부품학과	▶ 첨단소재부품학과
▶ 규제약학과	▶ 규제약학과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ICT안전학과	▶ ICT안전학과

*표기 학과는 다빈치캠퍼스 교육장을 사용하는 학과임

**표기 학과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학과로 아래 정원을 포함하여 모집

석사학위과정	정원	박사학위과정	정원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결손인원 활용형)	8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원확보율 충족형)	5

※ 각 학과별 세부 연계학과는 대학원에서 별도 관리함

(별표 2-1-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신설 2016.11.9.> <개정 2017.4.25., 2023. 4. 28.>

석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828명)		박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321명)	
일반과정 (55개 학과)		일반과정 (50개 학과)	
계	열	계	열
학과수		학과수	
1. 인문·사회계열	27학과	1. 인문·사회계열	26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문화학과 ▶심리학과 ▶철 학 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법 학 과 ▶정치국제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회계학과 ▶통계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체육학과 ▶산업융합보안학과** ▶스포츠융합공학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문화학과 ▶심리학과 ▶철 학 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법 학 과 ▶정치국제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회계학과 ▶통계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융합공학학과*	

석 사 학 위 과 정	박 사 학 위 과 정
-------------	-------------

계 열	학과수	계 열	학과수
2. 자연과학계열	11학과	2. 자연과학계열	11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생명과학과 ▶수 학 과 ▶동물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 학 과 ▶시스템생명공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생명과학과 ▶수 학 과 ▶동물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 학 과 ▶시스템생명공학과	
3. 공학계열	9학과	3. 공학계열	8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융합공학과 ▶도시개발·정책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융합공학과	
4. 의계열	1학과	4. 의계열	1학과
▶의 학 과		▶의 학 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학과수	계열	학과수
5. 예술계열	7학과	5. 예술계열	4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조형예술학과 ▶공연예술학과 ▶무용학과*		▶음악이론학과 ▶디자인학과 ▶공연예술학과 ▶무용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연 구 소	관련학과	연 구 소	관련학과
▶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과학과, 약학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과학과, 약학과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공학과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공학과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약학과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약학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공학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공학과
▶ 명문제약(주)	약학과	▶ 명문제약(주)	약학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명과학과		
▶ 국립암센터	약학과	▶ 국립암센터	약학과
		▶ 한미약품(주)	약학과
▶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4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3학과)	
학과명		학과명	
▶ 문화재학과		▶ 문화재학과	

▶ 문화연구학과	▶ 문화연구학과
▶ 독일유럽학과	▶ 독일유럽학과
	▶ 창업학과
▶ 에너지공학과	▶ 에너지공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 인적자원개발학과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 동북아학과	▶ 동북아학과
▶ 문학예술콘텐츠학과	▶ 문학예술콘텐츠학과
▶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 제약산업학과	
▶ 융합보안학과	▶ 융합보안학과
	▶ 예술학과
▶ 아동청소년학과	▶ 아동청소년학과
▶ 뉴미디어아트학과*	
▶ 향장예술학과*	

*표기 학과는 다빈치캠퍼스 교육장을 사용하는 학과임(단, 2017학년도는 미선발)

**표기 학과는 계약학과로서 정원이 따로 있음

***표기 학과는 정원의 학생에 한해 선발

※ 각 학과별 세부 연계학과는 대학원에서 별도 관리함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표 <신설 2023. 6. 26., 개정 2024. 4. 30., 2025. 7. 2.>

계열	과정	학부(과)명	정원(명)	비고
인문사회계열	석사	공공갈등정보학과	20	재교육형
	석사	ICT융합안전학과	20	재교육형
	석사	ICT환경안전학과	20	재교육형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9.20., 2012.11.24., 2014.9.25., 2016.9.2., 2019.8.23., 2020.08.31., 2020.12.29., 2024. 4. 30., 2024. 12. 26., 2025. 4. 28.>

구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영상미디어학과 ▶메타버스융합학과*	81	▶영상학과 ▶메타버스융합학과*	25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문통·번역학과	75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CAU-Leader MBA ▶Sustainable Management MBA	75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50	▶법학과	7

*표기 학과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학과로 아래 정원을 포함하여 모집

구분	석사학위과정	정원	박사학위과정	정원
첨단영상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 (결손인원 활용형)	5	▶메타버스융합학과 (결손인원 활용형)	1

(별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2.12., 2016.9.2., 2016.11.9., 2017.08.29., 2019.4.25., 2019.8.23., 2020.1.30., 2020.04.23., 2020.08.31., 2021.08.27., 2022.02.10., 2022.08.24., 2023. 9. 1., 2024. 7. 8., 2024. 8. 28., 2025. 7. 2., 2025. 8. 27.>

특수대학원명	석사과정	
	학과·전공명	입학정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70명
교육대학원 (서울)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문헌정보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아동영어교육전공, 교육공학전공, 상담심리전공*, 영양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학교체육행정전공, 영유아놀이테라피전공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전공 * 표시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가능	210명 (교원양성 과정 62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울)	▶커뮤니케이션학과	38명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서울)	▶인적자원개발학과 ▶글로벌물류학과	80명
건설대학원 (서울)	▶건설관리학과 ▶글로벌 EPC학과 ▶미래건설산업학과	36명
행정대학원 (서울)	▶행정학과 ▶다문화정책학과 ▶복지행정학과 ▶표준·기술규제학과 ▶데이터사이언스행정학과	42명

특수대학원명	석 사 과 정	
	학 과·전 공 명	입학정원
건강간호대학원 (서울)	▶간호시뮬레이션전공 ▶글로벌간호전공 ▶보건학전공 ▶커뮤니티케어전공 ▶전문간호(중양/노인/가정)전공	60명
예술대학원 (서울)	▶공연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123명
심리서비스대학원 (서울)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용사회심리학과 ▶법심리학과	68명
보안대학원 (서울)	▶산업기술보호학과 ▶산업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학과 ▶방산기술보호학과	40명
첨단광고PR대학원 (서울)	▶광고PR학과	30명
창업경영대학원 (안성)	▶유통전공 ▶창업경영전공 ▶기후경제전공 ▶지식경영전공 ▶창업컨설팅전공 ▶프랜차이즈경영전공	75명
국악교육대학원 (안성)	▶국악교육전공 ▶국악전문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40명

(별표 3-3)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 <신설 2022. 12. 26., 개정 2023. 12. 21.>

대학(원)	과정	학부(과)명	정원(명)	비고
건설대학원	석사	글로벌ESG건설학과	6	재교육형
보안대학원	석사	보안공학과	10	재교육형

(별표 4) 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 <개정 2012.9.20., 2012.11.24., 2013.6.18., 2014.2.6., 2014.4.24., 2014.9.25., 2015.9.2., 2016.5.30., 2017.2.14., 2017.4.25., 2017.08.29., 2018.4.26., 2018.11.29., 2019.4.25., 2019.12.19., 2020.04.23., 2020.12.29., 2021.08.27., 2022.02.10., 2022.04.25., 2022. 12. 26., 2023. 2. 13., 2023. 4. 28., 2024. 2. 19., 2024. 7. 8., 2024. 8. 28., 2025. 4. 28., 2025. 7. 2.>

대학	학과	학위	비고
인문대학 (서울)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사회과학대학 (서울)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정치학사 정책학사 행정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사회복지학사 언론학사 언론학사 문학사 경제학사	
자연과학대학 (서울)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과 수학과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대학	학과	학위	비고
공과대학(서울)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공학사 공학사 건축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수자 토목공학사 건축공학사 화학공학사 기계공학사
창의ICT공과대학 (서울)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차세대반도체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전자전기공학사
소프트웨어대학(서울)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공학사 공학사	컴퓨터공학사
사범대학 (서울)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경영경제대학 (서울)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글로벌광고PR전공) 지식경영학부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통계학사 광고홍보학사 글로벌광고홍보학사 지식경영학사 국제물류학사 산업보안학사	2016학번부터 적용
약학대학 (서울)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약학사 약학사	
의과대학(서울)	의학부	의학사	
적십자간호대학(서울)	간호학과	간호학사	
예술대학 (서울)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	연극학사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영화학사 연극영화학사	
가상융합대학	실감미디어학과*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	실감미디어학사 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사	

대학	학과	학위	비고
혁신융합과학기술대학* (서울)	혁신소재융용공학부* (첨단신소재전공) (나노융합전공) (적층제조전공)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생명공학대학 (안성)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농학사 농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경영경제대학 (안성)	경영학부 경제학부 지식경영학부	경영학사 경제학사 경영학사	
예술대학 (안성)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음악학부 (작곡전공) (성악전공)	문학사 미술학사 무용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실내디자인학사 의류학사 음악학사 음악학사	

대학	학과	학위	비고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글로벌예술학부 (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음악학사 음악학사 한국음악학사 한국음악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예술학사	
체육대학 (안성)	스포츠과학부 (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체육학사 체육학사 체육학사	
예술공학대학(안성)	예술공학부	공학사	
공과대학(안성)	첨단소재공학과	공학사	

* 표기 대학 및 학과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 및 학과로서 별도 입학정원 없음

구분	전공	학위	비고
연계전공	공기업관리 유통관리 외식산업경영 공공규범 글로벌 한국학 공공관리 반도체제조공학	공기업관리학사 유통경제학사 외식산업경영학사 공공규범학사 한국학사 공공관리학사 공학사	
융합전공	금융AI 문화콘텐츠 창업학 게임·인터랙티브미디어 소프트웨어·인문 사이버보안 테크놀로지아트 소프트웨어벤처 문화다양성 한류문화 데이터프라이버시 인공지능인문	금융인공지능학사 문화콘텐츠융합학사 창업학사 게임·미디어학사 소프트웨어·인문융합학사 사이버보안학사 테크놀로지아트학사 소프트웨어벤처융합학사 문학사 문학사 데이터프라이버시학사 인공지능인문융합학사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술학위)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2.12., 2016.9.2., 2016.11.9., 2017.4.25., 2017.08.29., 2018.11.29., 2019.4.25., 2019.8.23., 2019.12.19., 2020.04.23., 2020.12.29., 2021.08.27., 2022.02.10., 2022.08.24., 2023. 2. 13., 2023. 4. 28., 2023. 6. 26., 2024. 2. 19., 2024. 4. 30., 2025. 7. 2.>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고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유럽문화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역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기록관리학석사	문헌정보학박사 기록관리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국제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석사	무역물류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통계학석사	통계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동물생명공학과	농학석사	농학박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시스템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물생명공학과	농학석사	농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고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융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도시개발·정책학과	도시계획학석사 공학석사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음악연주학박사	
한국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한국음악이론학과	-	음악학박사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패션학과	패션학석사	-	
의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조형예술학과	미술학석사 사진학석사 예술학석사	-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학석사	공연예술학박사	
무용학과	무용학(실기)석사	무용학(실기)박사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AI학과	공학석사 문학석사	공학박사 문학박사	
글로벌혁신신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예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과간협동과정〉			
문화재학과	문학석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문학박사	
문화연구학과	문화학석사	문화학박사	
독일유럽학과	유럽지역학석사	유럽지역학박사	
창업학과	-	창업학박사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	
인적자원개발학과		인적자원개발학박사	
동북아학과	동북아학석사	동북아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예학석사	문예학박사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공학석사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약학석사, 제약산업경영학석사	-	
예술학과	-	예술학박사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고
융합보안학과	보안경영석사 보안공학석사	보안경영박사 보안공학박사	
아동청소년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뉴미디어아트학과	예술학석사		
향장예술학과	예술학석사		
스포츠융합공학과	스포츠공학석사	스포츠공학박사	
의회학과	의회학석사	의회학박사	
스마트시티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첨단소재부품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규제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규제약학박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ICT안전학과	ICT안전학석사	ICT안전학박사	
공공갈등정보학과	공공갈등정보학석사	-	계약학과
ICT융합안전학과	ICT안전학석사	-	계약학과
ICT환경안전학과	ICT환경안전석사	-	계약학과

(별표 6) 전문대학원 수여학위(전문학위) <개정 2012.11.24., 2014.9.25., 2020.08.31., 2024. 4. 30., 2024. 12. 26.>

대 학 원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고
첨단영상 대 학 원	▶영상학과	영상학(제작)석사 (“이수전공명”)	영상학박사 (“이수전공명”)	
	▶영상미디어학과	영상학(제작)석사 (“이수전공명”)		
	▶메타버스융합학과	영상학석사 (“이수전공명”)	영상학박사 (“이수전공명”)	
국제 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학석사 (“이수전공명”)	-	
	▶전문통·번역학과	통·번역학석사 (“이수전공명”)	-	
경영전문 대 학 원	▶Global MBA ▶CAU-Leader MBA ▶Sustainable Management MBA	경영전문석사 (MBA)	-	
법학전문 대 학 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JD)	법학전문박사(SJD) 법학박사(Ph.D)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전문학위) <개정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2.12., 2015.9.2., 2016.11.9., 2017.8.29., 2019.4.25., 2019.8.23., 2020.1.30., 2020.08.31., 2021.08.27., 2022.08.24., 2022. 12. 26., 2023. 9. 1., 2023. 12. 21., 2024. 8. 28., 2025. 7. 2., 2025. 8. 27.>

대 학 원	학 과	학 위	비 고
사회복지 대 학 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문학석사(아동복지학) 문학석사(청소년학)	
교 육 대 학 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이수전공명”)	
커뮤니케이션 대 학 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학석사(“이수전공명”)	
글로벌인적 자원개발 대 학 원	▶인적자원개발학과 ▶글로벌물류학과	인적자원개발학석사 국제물류학석사	
건 설 대 학 원	▶건설관리학과 ▶글로벌 EPC학과 ▶미래건설산업학과 ▶글로벌ESG건설학과	공학석사(“이수전공명”) 공학석사(“이수전공명”) 공학석사(“이수전공명”) 공학석사(“이수전공명”)	계약학과
행 정 대 학 원	▶행정학과 ▶다문화정책학과 ▶복지행정학과 ▶표준·기술규제학과 ▶데이터사이언스행정학과	행정학석사(“이수전공명”) 행정학석사(“이수전공명”) 행정학석사(“이수전공명”) 행정학석사(“이수전공명”) 행정학석사(“이수전공명”)	
창업 경영대학원	▶유통전공 ▶지식경영전공 ▶창업경영전공 ▶창업건설경영전공 ▶기후경제전공 ▶프랜차이즈경영전공	유통학석사 지식경영학석사(지식경영) 창업학석사(“이수전공명”) 창업학석사(“이수전공명”) 경제학석사(기후경제) 창업학석사(프랜차이즈경영)	

대 학 원	학 과	학 위	비 고
건강간호 대 학 원	▶간호시물레이션전공 ▶글로벌간호전공 ▶보건학전공 ▶커뮤니티케어전공 ▶전문간호전공	간호학석사 간호학석사 보건학석사 보건학석사 간호학석사	
예 술 대 학 원	▶공연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 ▶아트엔디자인학과	예술학석사(“이수전공명”) 예술경영학석사(“이수전공명”) 예술학석사(“이수전공명”)	
심리서비스 대 학 원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용사회심리학과 ▶법심리학과	심리학석사(“이수전공명”)	
보 안 대 학 원	▶산업기술보호학과 ▶산업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학과 ▶방산기술보호학과 ▶보안공학과	보안공학석사(“이수전공명”) 보안학석사(“이수전공명”) 개인정보보호학석사 보안공학석사 보안공학석사	계약학과
첨단광고PR 대 학 원	▶광고PR학과	광고PR학석사(“이수전공명”)	
국악교육 대 학 원	▶국악교육전공 ▶국악전문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이수전공명”)	

(별표 8) 교내 부설 연구소 <삭제 2015.9.2.>

(별지 제1호 서식)

학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19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
을 갖추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제1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제2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제3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부 전 공 : ○○○○대학 ○○○○학과(부) ○○○○전공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총장 (학위)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 학 ○○○○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과 ○○○○전공)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대 학 원 장 박 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총 장 박 사

학위번호 : 중앙대○○○○ 석○○○○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24. 12. 26.>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과 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과 ○○○○전공)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대 학 원 장 박 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총 장 박 사

학위번호 : 중앙대○○○○ 석○○○○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과 ○○○○전공)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대 학 원 장 박 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 ○ ○ ○ ○(직인)
총 장 박 사

학위번호 : 중앙대○○○○ 박○○○○

(별지 제4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인류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에 공헌하였으므로 이 대학교 총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명박○○○○

(별지 제5호 서식)

○ ○ 원

제 호

증 서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분야에 관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중앙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 ○ 원

제 호

증 서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부설) ○○대학원(○○교육원)
○○ 과정(○학점)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중앙대학교 부설 ○○○교육원 원 장 ○ ○ ○(직인)]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직인)